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9

발의연월일: 2020. 6. 19.

발 의 자: 송옥주・유동수・정춘숙

박찬대 • 박용진 • 안호영

김홍걸・박 정・서삼석

임종성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경우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검정업무 수탁기관의 임직원, 시험문제의 출제위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, 시험문제 출제 및 검정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되거나 시험 관리·감독위원, 학원 강사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부정행위 개입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 는 상황임.

이에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(안 제25조의3 신설 및 제26조제1 항).

법률 제 호

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3(검정 방해행위 금지) 누구든지 시험문제 유출 또는 전달, 부당하게 점수를 높게 채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이 국가기 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6조제1항 중 "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자"를 "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한다.

- 1.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자
- 2.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
- 3.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이 국가기술자격 검 정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조력한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5조의3(검정 방해행위 금지)
	누구든지 시험문제 유출 또는
	전달, 부당하게 점수를 높게 채
	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타
	인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
	합격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서
	<u>는 아니 된다.</u>
제26조(벌칙) ① <u>제19조제1항을</u>	제26조(벌칙) ① <u>다음 각 호의 어</u>
위반하여 검정을 한 자는 2년	<u>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</u>
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	
하의 벌금에 처한다.	
<u><신 설></u>	1.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
	<u>정을 한 자</u>
<u><신 설></u>	2.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
	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
	<u>라</u>
<u><신 설></u>	3.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부정
	한 방법으로 타인이 국가기술
	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할 수
	있도록 조력한 사람
②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	<u><</u> 삭 제>
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	
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	
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

<u>③</u> (생 략)

② (현행 제3항과 같음)